

2011. 1.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발의자 : 이정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외 2인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발 의 서 명 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 정 임	이 정 임	
신 철 상	신 철 상	
김 호 경	김 호 경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9
------	------

발의연월일 : 2011. 1. 10.

발 의 자 : 이정임 의원의 2인

1. 제안이유

2011. 1. 1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조제2항제2호의 가목 중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으로 하고,
나목 중 “행정복지본부”를 “행정복지국”으로 하고,
다목 중 “환경사업소”를 삭제 한다.
- 제3조제2항제3호의 가목 중 “미래경영본부”를 “경제건설국”으로 하고,
나목 중 “관광시설관리소”를 “환경사업소”로 한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제1항 중 “임기는”를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로 하고
- 제7조(특별위원회)제3항 중 “윤리심사”를 “윤리심사나 자격심사”로 제4항중 단서조항으로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 제9조(위원의 선임)에서 제목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과 개선”으로 하고,
제3항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중에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신설)
- 제11조제4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 붙임 1.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를 “제천시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임기는”을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윤리심사”를 “윤리심사나 자격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과 개선)”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중에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의회</u>에 두는 상임 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제천시의회</u>에 - - - -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자치행정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전략기획실</u>, <u>투자유치담당관</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행정복지본부</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u>보건소</u>, <u>환경사업소</u>, <u>시립도서관</u>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미래경영본부</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농업기술센터</u>, <u>수도사업소</u>, <u>관광시설관리소</u>에 속하는 사항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u>기획감사담당관</u>, <u>정책담당관</u> - - - - - - - - - - 나. <u>행정복지국</u> - - - - - 다. - - - (<u>삭제</u>) - - - - - - - - - - 3. 산업건설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경제건설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 - - - <u>환경사업소</u> - - - - - - - - - -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생략>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 - 임기는 <u>선임된 날로부터</u> - ② <현행과 같음>
<p>제7조(특별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생략> ③ 의회는 <u>위원의 윤리심사</u> 또는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u>윤리특별위원회</u>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p><단서 신설></p>	<p>제7조(특별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윤리심사나 자격심사</u>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p>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의 선입)</p> <p>①~② <생략> <신설></p> <p>제11조(부위원장)</p> <p>①~③ <생략> <신설></p>	<p>제9조(위원의 선입과 개선)</p> <p>①~② <현행과 같음> ③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 중에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p> <p>제11조(부위원장)</p> <p>①~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